

【 국내금융 뉴스 】

산림청, 대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작물인 감, 밤나무에 이어 대추 품목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며, 가입기준은 대추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함.
 - 보상 재해 범위는 태풍, 우박, 호우, 강풍, 한해, 냉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조수해, 화재에 대해 보상하고 보험가입액의 70%를 보장함.
 - 보험 판매기간은 '10.4.1~4.30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적용은 햇가지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임.

-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역인 충북 보은,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으로 전체 생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됨.
 - 가입절차는 해당 지역 농협 등에 가입안내를 거쳐 가입신청 후,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 증권을 발급하면 됨.

-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말린 대추 외에 간식용 생대추의 수요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대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추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대추 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여 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 7천 200여 농가가 2만8천ha에서 대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8년 생산액은 약 675억원에 달함.

(산림청, 농작물재해보험 '대추'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4/9)